

[illegible]

취득대상재산현황

○ 현충탑 건립

〈개 요〉

남구 소사동 64번지 근린공원에서 춘의지구 테포즈 공원내로 현충탑을 이전건립하기 위한 것임.

- 위 치 : 중구 원미동 산 20-38번지 일원
- 면 적 : 2,858평(시유지 : 1,019평,
사유지 : 1,839평)

• 예산액 :

부지매입비 - 500,000천원(평당 272천원)

건립비 - 1,072,200천원

• 추진배경

- 관내 보훈단체장 및 회원들이 우리시의 현충탑이 경인국도 변에 위치하고 있어,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과 매연으로 현충탑 경내 수목 및 시설물 관리가 어렵고,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시가지내 위치하고 있어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에 부적당하므로, 다른 장소로 이전건립 건의.
- 시의회 제5회 임시회에서 의장등 31명 의

원이 현재의 현충탑을 춘의지구 테포즈 공원 인근으로 이전 건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시

○ 부천시 중부도서관 건립

- 위 치 : 중구 원미동 산 3-14,15
- 부지면적 : 7,135㎡ (2,158평)
- 건축면적 : 4,396.75(1,330평)
- 구 조 : 철근콘크리트 스타브
(지하 1층, 지상 3층)

- 예산액 : 시설비 2,992,500천원

국비	350,000천원
도비	400,000천원
시비	2,242,500천원
시설부대비	195,112천원
계	3,187,612천원

- 건립배경 : 대통령 공약사업 ('87. 11. 17 관리번호 18-09-29)
- 70만을 상회하는 부천시에 기존 시립도서관 1개소(열람석 : 604석)로는 시민 독서인구 수용의 한계에 도달하였으며, 독서인구 및 학생들의 오랜 숙원 사업임.

관 련 법 규

지방자치법

제 35 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조례의 제정 및 개폐
2. 예산의 심의·확정
3. 예산의 승인
4.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, 수수료, 분담금,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
5.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·관리 및 처분
6.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
7. 공공시설의 설치·관리 및 처분

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
9. 청원의 수리와 처리

10.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지방재정법

제 77 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, 관리 및 처분에 관

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제 78 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공유재산의 취득·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.

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 83 조(잡종재산의관리및처분) ①잡종재산은 이를 대부·매각·교환·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,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잡종재산의 대부·매각·교환·양여 및 사권 설정에 관한 사항과 대부요율·대부료의 산정방법·가격평정 및 대금납부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재정법시행령

제 84 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 ①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

제 95 조(잡종재산의매각) ①잡종재산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때
7.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때
24. 재산의 위치·형태·용도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불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

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때

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

제 37 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법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 39 조 2(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있는 경우) 영제95조 제1항24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(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㎡ 이하, 시지역에서는 300㎡이하, 기타지역에서는 400㎡이하의 토지)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때
2.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있는 폐도, 폐구거,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공업단지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, 이 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.